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영종 A28블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 **국토교통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과 관련한 서류접수 방법을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합니다 (※ 견본주택 접수 불가)**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합니다. (미 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개요 안내 [문의사항: 1811-1409]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1번지(영종하늘도시 A28블록)**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16개동 **총 1,409세대**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총 140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10%범위 내 공급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모집공고문(예정일: 2021.1.28.) 참고**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타입별 대상 세대수**

구분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특별공급 (총 공급세대수 10%범위 내)					
주택형	84A	84B	84C	98A	98B	계
총 세대수	433	24	405	215	332	1,409
경제자유구역 공급세대수	43	3	40	21	33	140
예비입주자 (300%)	(129)	(9)	(120)	(63)	(99)	(420)

※ 괄호(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분양승인/보증 등 관련하여 규모, 세대수, 타입, 특별공급 세대, 분양일정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 분	일 정 (예정)	비 고
특별공급 사전접수 (우편접수)	2021년 1월 18일(월) ~ 2021년 1월 25일(월)	* 우편접수 주소 **(※ 등기 발송 필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견본주택** * **우편 소인 날짜 기준: 2021년 1월 22일(금) 까지 인정** *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입주자모집공고	2021년 1월 28일(목)	* 일간신문 및 분양홈페이지 **(www.elife.co.kr)**
특별공급 접수(청약)	2021년 2월 15일(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08:00~17:30)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1년 2월 23일(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 조회
계약 체결	2021년 3월 8일(월) ~ 2021년 3월 14일(금)	* 장소: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 * 시간: 10:00~17:00 * 모집공고 및 당사홈페이지 참고 * 계약체결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 일체는 해당 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서류 미 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문의사항: 1811-1409]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발급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통	재직회사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재직회사	법인 신청의 경우(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불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재직회사	
	○		재직증명서 1통	재직회사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		주택특별 공급신청서	-	소속업체 인감날인 제출(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무주택서약서	-	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경제청 및 당사 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 참고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청약통장 가입내역→해당페이지 인쇄)** **※ 모집공고 예정일기준 예치금 충족 시 청약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발급)
내국인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	본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날인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 (분리세대)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 (상세발급)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본인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국내거소 사실확인서	본인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기타	-	추후 동점자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원 등)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1.01.28(목)(예정) 1개월 이전까지 발행분(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가능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 주민등록번호 ",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및 " 주소변동 이력 ", " 발행일자 " 등 모두 포함하여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Ⅳ 신청자격 및 요건 [문의사항: 1811-1409]

■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경제자유구역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제자유구역 민영주택 내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table><tr><th>구분</th><th>인천광역시</th><th>서울특별시</th><th>경기도</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 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청약자 주소지를 기준)

Ⅴ 대상자 선정 방법 [문의사항: 1811-1409]

■ **대상자 선정 방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 접수하고,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접수된 특별공급 신청서와 관계서류 확인 후, 일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해당 기관추천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순위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 문자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선정 업무와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 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30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Ⅵ 유의사항 안내 [문의사항: 1811-140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로 시행합니다. 견본 주택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 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 지역 지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특별공급에 있어서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회사 서류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추첨일 이후 사업주체에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등)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본인에 한함)

■ **특별공급(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청약 신청은 1세대 1건만 가능**하므로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 내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따라 전매기간이 상이 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심의심사 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2021.01.28.(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전매제한 기간 내 전출 또는 퇴직,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하는 경우 공급받은 주택은 계약이 취소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재공급하게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인사기록카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타 지역(인천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으로 발령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미 충족 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환수 조치)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1) 종전 근무 기업의 근무 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외국인투자기업(A)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현재 외국인투자기업(B) 10개월간 근무: (B)기업 근무기간만 인정
>
> **예시2) 타 지역의 지사로 발령받은 근무자 신청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A)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본사,지사)에서 근무한 경우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01.28(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견본주택 및 안내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 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상기 일정 및 주요사항 등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811-1409 홈페이지: https://www.elife.co.kr

■ 참고사항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총1,409세대

해당타입	총세대수	분양가(평당가)	비 고 (기관추천 해당타입)
84A	422	10,564 ~ 11,071	해당
84B	24	10,443 ~ 10,943	해당
84C	393	10,427 ~ 10,923	해당
98A	212	10,493 ~ 10,995	해당
98B	328	10,497 ~ 11,000	해당
84AT	11	-	-
84CT	12	-	-
98AT	3	-	-
98BT	4	-	-
소계	**1,409**	**10,500 ~ 11,000천원**	

※ 분양가는 예상평당가로 분양가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형 및 세대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1811-1409**

■ 홈페이지: https://www.elife.co.kr

사업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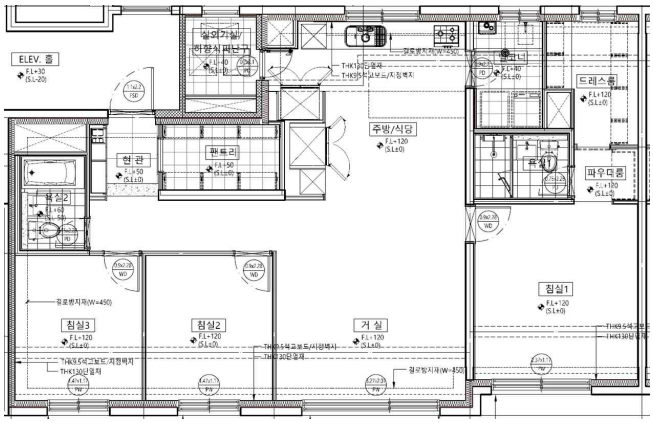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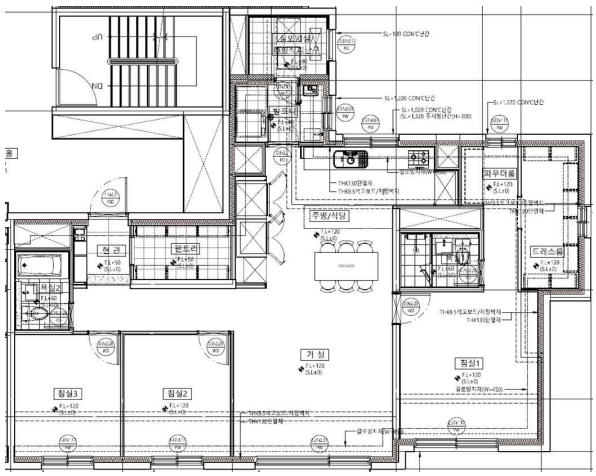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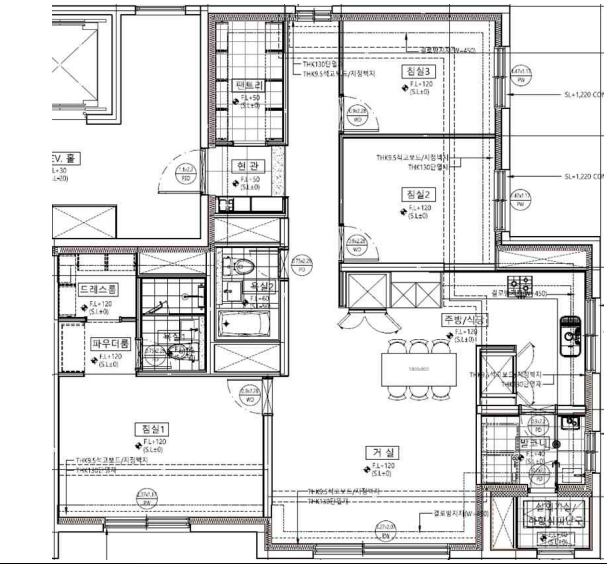
■ 단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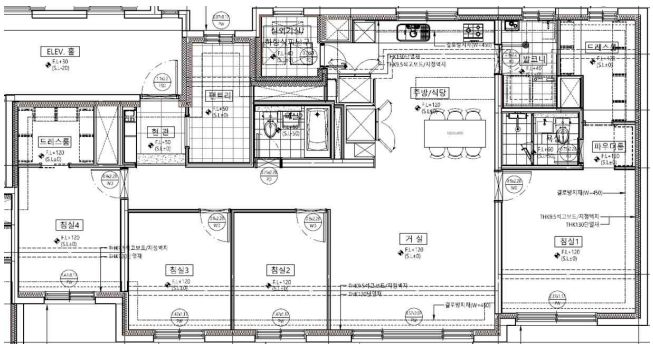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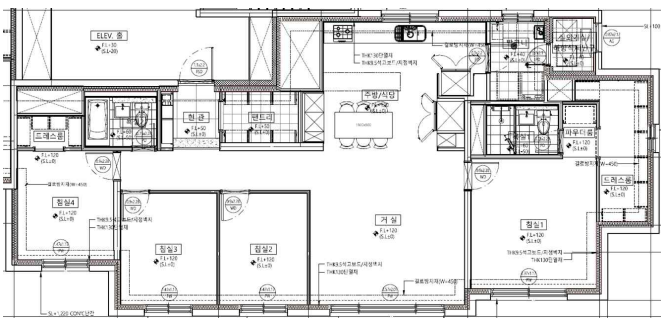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

84A		84B	
			
향배치	남서,남동	향배치	남서,남동
침실	침실1,2,3	침실	침실1,2,3

84C	
	
향배치	남서,남동
침실	침실1,2,3

98A		98B	
			
향배치	남서,남동	향배치	남서,남동
침실	침실1,2,3,4	침실	침실1,2,3,4

※ 해당 각 타입별 평면도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사업시행인허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11-1409) 또는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9 - 4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1조(목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5호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대상자 인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포함한다)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2. "종사자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 기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약국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은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기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무주택자를 말한다)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의함)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특별공급을 받는 사실이 없는 경우.
2.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특별공급 신청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공급을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접수된 특별공급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확인 후 일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통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신청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신청인 경우)
5. 재직증명서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7. 특별공급신청서
8. 무주택서약서
9.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내국인〕

1. 신분증
2.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3.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
4. 주민등록표등본(본인)
5.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단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
6. 주민등록표초본(본인)
7.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1. 외국인등록증
2. 국내거소 신고 사실 확인서

제7조(자격의 확인 등)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신청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당해 견본주택 내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공고일 기준 해당기업에 장기근속(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근무)한 자
3. 공고일 기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자
4. 주민등록법상 인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자

제9조(입주자 선정 방법) 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1회에 한하여 선정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는 이 외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① 사업주체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제출은 당첨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전매행위 등의 제한)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의 상실 등) ①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매제한 기간 내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2.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②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은 본 기준으로 대체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 소			
연 락 처	자택 : ( ) - , 휴대폰 :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근 무 부 서		직책 및 직위	
소 재 지 주 소			☎( ) -
근 무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월		

2. 가족사항(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작성이 가능함.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위 치	신청주택형	비 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28BL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1번지	□84㎡A □84㎡B □84㎡C □98㎡A □98㎡B	분양(V) 임대( )

4. 첨부서류

공통서류	확인	내국인	확인	외국인	확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대조필)	□	**1. 신분증** (사본)	□	**1.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
2.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 필)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2. **국내거소신고 사실 확인서** (재외동포)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신청인 경우)	□	**3.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서명)	□	**3. 서명인증서** (본국관공서의증명)	□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인 경우)	□	**4. 주민등록등본** (본인) ※ 주민번호 뒷자리 등 상세발급	□		
5.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사용인감 날인)	□	**5.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직장 사용인감 날인)	□	**6.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과거변동이력 등 상세발급	□		
7. 특별공급 신청서	□	**7.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뒷자리등 상세발급	□		
8. 무주택서약서 (신청인 본인 인감 날인)	□				
9.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청약통장가입은행→청약통장 순위조회)	□				
10.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 해당사항에 "□"안에 "V"으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신 청 인**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속업체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성 명	(인)	**신청주택형**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 . .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소형저가 주택은 일반 공급에서 해당하며 특별공급 신청 시 유주택임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됨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에 따름(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인)

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청인 : _____(인)

대리 신청시 대리인 : _____(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당사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 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여부 및 특별공급 청약안내 등 상담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연락처			
주 소	시 구 동		

■ 개인정보 수집 · 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영종하늘도시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엘이앤씨(주), ㈜유성, ㈜투커넥트투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서 상 기입된 신청자 및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주지역, 연락처, 재직근무처, 소득정보, 청약통장가입내역 - 선택항목: 없음 - 대리신청: 성명
개인정보의 수입 · 활용목적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수집일로부터 10년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입 · 활용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분양정보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구분	동의내용	동의 유·무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 년 월 일

동의인 : (인)